

「교원인사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2. 7. 9. 개정 판 (시행 2012. 9. 1.) → 2015. 6. 30. 개정 판 (시행 2015. 6. 30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86/compare?from=209&to=21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31:1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임용권)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용한다.	제5조(임용권)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〈개정 2015-06-30〉
제9조(기한부 임용)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(제43조 제3항)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.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. 다만,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5-02-24〉	제9조(기한부 임용) ① 교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(제43조 제3항)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.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. 다만, 재임용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5-02-24〉〈개정 2015-06-30〉
제13조(보직)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 ~~의~~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. ① 처장, 대학원장,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한다.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	제13조(보직) 보직이라 함은 직제 규정이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.〈개정 2015-06-30〉 ① 부총장, 처장,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보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〈개정 2015-06-30〉 ② 기타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 기관장과 학과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제14조(자격과 임기)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.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.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.	제14조(자격과 임기) ① 제13조 제1항의 보직은 정교수로 보한다. 단, 사무처장은 참여로 보할 수도 있다.〈개정 2015-06-30〉 ② 교원의 보직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. ③ 총장은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임 동의를 구할 수 있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원인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제청하고"를 "제청으로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2월"을 "2개월"로 한다.

제13조 중 "부서의 장"을 "부서장"으로 하고, "같다."를 "같다.〈개정 2015-06-30〉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처장, 대학원장,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"를 "부총장, 처장, 일반대학원장은 이사회의"로 하고, "보한다."를 "보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〈개정 2015-06-30〉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"를 "정교수로 보한다."로 하고, "있다."를 "있다.〈개정 2015-06-30〉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